

소양~동상 국지도 시설개량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제2025-204호(2025.7.18.)로 고시되고 제2026-178호(2026.6.12.)로 변경된 『소양~동상 국지도 시설개량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사업명 : 소양~동상 국지도 시설개량공사
- 사업시행자 : 전북특별자치도(도로공항철도과) * 보상업무 수탁기관 : 전북개발공사
- 사업위치 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, 동상면 사봉리 일원
- 사업면적 : 129,863.0㎡
- 사업기간 : 2025.7.18. ~ 2031.12.31.

2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

구분	소재지									
토지	<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> 94필지									
	446-1	산19-5	산19-1	447-9	447-3	산20-13	산20-5	447-6	447-1	447-5
	110-8	110-1	110-7	산20-9	산20-3	411-9	산20-2	411-8	산20-11	411-7
	411-2	산20-7	산20	446-2	447-8	447-17	447-16	761-41	761-42	447-14
	447-15	447-7	103-1	109-1	110-10	762-1	447-10	110-11	110-9	110-13
	110-14	산20-4	산20-12	396-9	396-5	396-1	396-4	761-45	396-6	396-7
	396-8	411-20	산20-14	441-18	441-19	342-3	342-4	342-1	343-2	342-5
	산21-2	산21-4	산21-3	산21-1	산22-2	343-1	산22-3	343-4	340-4	산22-4
	343-9	340-9	340-7	341-4	340-8	761-43	산25-1	산25-5	산26	산26-4
	산20-1	343-10	343-11	343-7	343-6	343-12	343-13	340-5	339-2	339-1
	산26-5	산26-6	산27-5	산27-4						
	<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> 38필지									
	228-4	228-5	228-6	산118-2	산121-4	산119-2	산121-5	산121-6	산114-1	230-1
	232-1	233-6	1131-1	1131-3	233-3	산121-7	산120-3	238-3	238-1	239-6

	1105-62	240-3	240-4	240-1	산125-1	산126	산126-1	242-1	산120-4	238-4
	239-5	240-5	241-6	241-5	310-2	242-3	1118-8	1118-7		
물건	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									
비고	※ 추후 사업지구 변경, 측량 및 조사 등으로 보상면적 및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열람장소와 완주군 및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「 www.jbdc.co.kr 」 [공지사항]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(인적사항 제외)									

-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.
-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불명, 미등기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3. 열람 및 이의신청

-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6.10.7.(수) ~ 2026.10.21.(수) 09:00~18:00
 - ※ 열람기간 중 토요일,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- 열람장소 및 방법
 - 전북개발공사 보상분양처 (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, ☎063-280-7424)
 - 완주군 도로교통과 도로시설팀 (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☎063-290-2794)
 -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.
-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
 - 대상물건 및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위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.
 -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4. 보상시기 : 2027년 1월~ 2027년 3월

- ※ 감정평가 지연 등 현지어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추후 개별 통지 예정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- 보상액 산정방법
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, 같은 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시·도지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.
- 보상금 지급방법 : 전액 현금 지급
- 보상 절차
 -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→ 손실보상협의 →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) →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
 -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3조,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6. 기타사항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(2026.11.20.) 감정평가법인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,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개발공사 보상분양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(단,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.)
 - ※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본인이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, 신분증사본 등을 첨부하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등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 - ※ 사업시행자 및 전북개발공사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우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써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하락 내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

수 있습니다.

-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북개발공사 보상분양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개인별 보상액, 협의기간,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하고, 손실보상 착수 전에 보상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릴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보상분양처(☎063-280-742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10. 7.

전북특별자치도지사 · 전북개발공사사장